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2호 2024. 1. 12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예 규

○ 남원시 예규 제41호 남원시 승화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운영에 관한 지침-----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승화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운영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24년 1월 15일

남원시 예규 제 41 호

남원시 승화원 공설화장시설 공동 운영에 관한 지침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남원시·임실군·순창군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남원시 승화원 공설화장시설 상호 사업협약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남원시 승화원 내 시설 중 공설화장시설(이하 “공설 화장시설”이라 한다)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관리·운영) 공설화장시설은 남원시가 관리·운영한다.

제4조(사용자 자격) 공설화장시설은 남원시·임실군·순창군(“이하 동부권 3개 시·군”)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한다.

제5조(사용료) 동부권 3개 시·군민의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는 「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운영주체) 공설화장시설 운영은 남원시 직영으로 한다. 다만, 위탁 운영 시 동부권 3개 시·군이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화장로 사용) 공설화장시설 화장로 1기는 임실·순창군민 위주로 사용하되, 관내·외 지역 화장수요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

제8조(운영비 및 시설개보수비 부담) 운영비 및 시설개·보수비는 매년 9월 말일 기준으로 동부권 3개 시·군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외 이용분 제외 후 인구 수에 비례하여 공동부담한다. 다만, 운영 기간이 1년이 도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운영비를 편성한다.

제9조(인력 구성) 공설화장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동부권 3개 시·군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임실군, 순창군은 인력 각 1명씩을 파견해야 하며, 직렬은 조정할 수 있다. 또한,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. 임실군, 순창군은 파견 인력이 면직(免職) 등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재파견해야 한다.
3.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남원시에서 충당한다.

제10조(규정의 변경) 동부권 3개 시·군은 상호 업무협력과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